# 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4

발의연월일: 2024. 6. 17.

발 의 자: 민형배·조인철·이정문

김태선 · 안도걸 · 조 국

이기헌 • 박홍배 • 이수진

주철현 • 전진숙 • 양부남

정진욱 • 박균택 • 정준호

전용기 의원(16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(이하 "위원회")가 수집·생산한 기록물의 이관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.

현행법상 위원회가 수집·생산한 기록물은 진상규명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5·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기관등 또는 단체로 옮길 수 있습니다.

위원회 활동 종료일은 2024년 6월 26일입니다. 기록물 이관 준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록물 이관이라는 별도의 '동의안'을 정부가 제출해 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이관 대상기관도 모호합니다. 더구나 5· 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입니다. 가치 보존을 위 해서는 신속한 기록물 이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.

이에 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을 별도 절차 없이 5·18

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·18기념재단 등으로 이관하도록 개정하고자합니다. 시민의 5·18민주화운동 기록물 접근권을 강화하고, 세계기록 유산 추가 등재 기회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(안 제57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### 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제2항 중 "수집한"을 "수집하거나 생산한"으로, "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5·18민주화운동"을 "이후 5·18민주화운동"으로, "국가기관등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다"를 "5·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·18기념재단 등으로 이관한다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7조(5·18민주화운동 관련 기	제57조(5・18민주화운동 관련 기
록물에 대한 조치) ① (생 략)	록물에 대한 조치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	②
위하여 <u>수집한</u> 기록물은 위원	<u>수집하거나 생산한</u>
회 활동 종료 <u>이후 국회의 동</u>	<u>이후 5·18민주화</u>
의를 얻어 5·18민주화운동 관	<u> </u>
련 업무를 수행하는 <u>국가기관</u>	<u>5·1</u> 8민주화
등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	운동기록관 및 5·18기념재단
<u>다</u> .	<u>등으로 이관한다</u> .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